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4. 7 선고 2015가단17398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변론 종결2016. 3. 24.

판결 선고2016. 4. 7.

주 문

1. 피고 B, C, D, E, F, G, H, I, J, K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파주시 R 전 641㎡를 인도하고,
나.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지상 창고 57.1㎡,
같은 도면 표시 1, 10 내지 16, 4,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지상 주택 112.1㎡,
같은 도면 표시 13, 17 내지 21, 14,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③부분 지상 창고 9.7㎡,
같은 도면 표시 20, 22, 25, 26, 23, 24, 31, 21,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④부분 지상 주택 125.6㎡,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24,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⑤부분 지상 창고 6.3㎡,
같은 도면 표시 25 내지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⑥부분 지상 보일러실 1.9㎡를
각 철거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L, M, N는 위 제1의 나항 중 ①부분 지상 창고 57.1㎡, ②부분 지상 주택 112.1㎡, ③부분
창고 9.7㎡에서,
나. 피고 O, P, Q은 위 제1의 나항항 중 ④부분 지상 주택 125.6㎡, ⑤부분 지상 창고 6.3㎡, ⑥부분
지상 보일러실 1.9㎡에서
각 퇴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파주시 R 전 641m²(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은 원래 망 S의 소유였는데, 망 S의 사망으로 F, 피고 B, C, D, E, F, G, H, I, J, K이 이 사건 대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이하 F를 제외한 나머지 S의 상속인들을 '피고 B 등'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10. 9. 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0. 10. 7. 접수 제745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대지 지상에는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① 내지 ⑥ 부분과 같은 건물(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각 건물은 원래 망 S의 소유였는데, 망 S의 사망으로 F, 피고 B 등이 이 사건 각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F, 피고 B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41785호 대지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21. F, 피고 B 등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는 권원으로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대가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F, 피고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37,9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2. 2. 15.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F, 피고 등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1,436,732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고, F, 피고 B 등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2014. 9. 18.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12. 31. F, 피고 B 등에게 위 판결에 근거한 지료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2015. 2. 10.까지 지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소멸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5. 5. 16.경까지 F, 피고 B 등(피고 B, I은 제외)에게 위 의사표시가 도달하였고, 원고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소멸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B 등에게 송달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대지 지상 ① 내지 ③ 건물에는 피고 L, M, N가, ④ 내지 ⑥ 건물에는 피고 O, P, Q이 각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D,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는 2015. 8. 4. T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1 내지 11은 피고 B 등을, 피고 12 내지 17은 순차로 피고 L, M, N, O, P, Q를 각 의미한다).

나. 판단근거

1) 피고 B, C, D, F, G, H, I, K, M: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J, L, N, O, P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E, Q에 대한 청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참조).

한편,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야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인 피고 E을 비롯한 피고 B 등은 이 법원 2010가단41785 판결의 확정을 전후하여 2년분 이상 위 판결에서 정한 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 E을 비롯한 피고 B 등에게 지료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 E을 비롯한 피고 B 등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함과 아울러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구하고 있는바, 그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E을 비롯한 피고 B 등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 E을 비롯한 피고 B 등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E은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각 건물 중 ④ 내지 ⑥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Q은 위 건물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류경은

별지